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71호, 2022.6.10. 공포)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지의 근거가 되는 약관사항 및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안

제54조의2 삭제 및 안 제55조의6 신설, 안 별표 4의2)

1)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을 별표 4의2에서 규정함(안 제55조의6제1항 신설 및 안 별표 4의2)

2) 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 접수, 포상금의 결정, 지급 및 지급 취소

등 포상금 관련 제반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5조의6제2항 신설)

나. 조사의 방법·절차 및 자료의 보호 (안 제60조, 안 별표 5)

1)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증표를 내보여야 함(안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안 별표 5)

2) 침해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획득한 자료는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원인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괴하여야 함(안 제60조제3항 신설)

다. 속이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약관 사항(안 제60조의10 신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등 조치의 사유 및 내용, 이용정지기간,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및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절차를 이용약관에서 정하도록 함

라.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안 제60조의11 신설)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제공중지요청기관에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공중지요청기관은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조치를 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9 제2호머목)

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제5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등)

①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 접수, 포상금의 결정, 지급 및 지급 취소 등 포상금 관련 제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제59조의 제목 “(민·관 합동조사단의 구성 등)”을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민·관합동조사단”으로, “구성할 때에는 다음”을 “다음”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조사단의 사업장 출입)”을 “(조사의 방법·절차 및 자료의 보호 등)”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자료제출요구서 또는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자료의 폐기·은닉·손실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표 5에 따른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조사단이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라 침해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획득한 자료는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원인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10(속이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약관 사항 등)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조치”

라 한다)의 사유 및 내용

2. 이용정지기간

3.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4. 이용자에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알리는 방법 및 절차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
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서면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
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보안에 관한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
차 (제54조의2제2항 관련)”를 “정보보호 취약점에 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제55조의6제1항 관련)”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급 기준”을 “지급 대상·기준”으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안”을 “정보보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가
목 중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호 나목의 정보보호 취약점의 인정

별표 4의2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를 삭제하며, 가
목3)을 2)로 하고, 같은 3)(중전의 3)) 중 “1) 및 2)에 따른 인정 결과 신
고된 취약점이 신규 보안”을 “1)에 따른 판단 결과 1호 나목의 신고 대상
정보보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목(중전의 다목) 중 “나목에 따라 평가가 완료된 취약점에 대
한”을 “가목에 따라 인정된 정보보호 취약점에 대한”으로, 같은 목 중
“신규 보안”을 “정보보호”로, 같은 목 중 “결정한다”를 “평가하여 결정한
다”로 한다.

1) 1호 나목의 신고 대상 정보보호 취약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기본 정보는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신고내용만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4의2 제3호가목 중 “신규 보안”을 “신고한 정보보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신규 보안”을 “정보보호”로, “획득한”을 “획득하여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신규 보안”을 “정보보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5의 제목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원 증표 (제60조 제2항 관련)”을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조사 증표 (제60조제2항 관련)”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원증”을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조사증”으로 하고, “직위”를 “직위 또는 직급”으로 하며,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원임을 증명합니다”를 “제48조의4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조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로 한다.

별표 9 제2호버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머목을 버목으로 한다.

머.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11호의3	300	600	1,000
---	-----------------	-----	-----	-------

별표 9 제2호버목(중전의 머목) 위반행위란 버목 중 “법 제48조의4제4

항”을 “법 제48조의4제5항”으로 한다.

별표 9 비고 중 “서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처목과 터목)”을 “어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커목과 퍼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정부는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의2와 같다.	<삭 제>
<신 설>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등) ①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 접수, 포상금의 결정, 지급 및 지급 취소 등 포상금 관련 제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제59조(민·관 합동조사단의 구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9조(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

이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민·관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 다음 -----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① 조사단이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0조(조사의 방법·절차 및 자료의 보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자료 제출요구서 또는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자료의 폐기·은닉·손실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표 5에 따른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신 설>

는 조사단이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라 침해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획득한 자료는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원인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60조의10(숙이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약관 사항 등)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조치”라 한다)의 사유 및 내용
2. 이용정지기간
3.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4. 이용자에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알리는 방법 및 절차

<신 설>

제60조의11(숙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

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보안에 관한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54조의2제2항 관련)

1. 포상금 지급 기준

가.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나.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신규 보안 취약점으로서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취약점으로 한다.

다. 포상금액

포상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2. 포상금 지급 절차

가. 신규 보안 취약점 인정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업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정보보호 취약점에 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제55조의6제1항 관련)

1.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가.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나.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신규 정보보호 취약점으로서 침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취약점으로 한다.

다. 포상금액

포상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2. 포상금 지급 절차

가. 1호 나목의 정보보호 취약점의 인정

1) 취약점의 기본 정보 및 신규 보안 취약점 여부는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2) 신고내용만으로 신규 보안 취약점 인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1) 및 2)에 따른 인정 결과 신고된 취약점이 신규 보안 취약점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료한다.

나. 신규 보안 취약점의 내용 평가

가목에 따라 신규 보안 취약점으로 인정된 취약점의 내용은 법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평가한다.

다. 포상금 결정

나목에 따라 평가가 완료된 취약점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신규 보안 취약점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및 정도, 취약점 악용의 용이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 포상금 지급 취소 기준

가. 신규 보안 취약점을 일정 기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내부 정보 활용, 사전 공모 등 부정한 사유로 신규 보안 취약점 정보를 획득한 경우

다.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신규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여 이미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라.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마.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비고

“신규 보안 취약점”이란 보완에 관한 취약점으로서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말한다.

1) 1호 나목의 신고 대상 정보보호 취약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기본 정보는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신고내용만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1)에 따른 판단 결과 1호 나목의 신고 대상 정보보호 취약점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료한다.

나. 포상금 결정

가목에 따라 인정된 정보보호 취약점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정보보호 취약점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및 정도, 취약점 악용의 용이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3. 포상금 지급 취소 기준

가. 신고한 정보보호 취약점을 일정 기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내부 정보 활용, 사전 공모 등 부정한 사유로 정보보호 취약점 정보를 획득하여 신고한 경우

다.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하여 이미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라.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마.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
관합동조사단원 증표 (제60조제2
항 관련)**

제 호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 관합동조사단원증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활 동 기 간: ~	사 진 (2.5c m×3c m)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 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원임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56mm×80mm [보존용지 (1종) 120g/㎡]

- 비 고
1. 규 격: 가로 56mm, 세로 80mm
 2. 바탕색: 황 색
 3. 복 선: 적 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조사
증표 (제60조제2항 관련)**

제 호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조사증	
소 속: 직 위 또는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활 동 기 간: ~	사 진 (2.5c m×3c m)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 조의4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 장 등에 출입·조사할 수 있음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56mm×80mm [보존용지 (1종) 120g/㎡]

- 비 고
1. 규 격: 가로 56mm, 세로 80mm
 2. 바탕색: 황 색
 3. 복 선: 적 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 러. (생략)				
<신 설>				
머. 법 제48조의4제4항 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 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 제3항제12 호	300	600	1,000
버. ~ 두. (생략)				
비고: 서로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치목과 티목은 제외한다) 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하도 록 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 러. (현행과 같음)		
머. 법 제48조의4제5 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6조 제3항제11 호의3	300	600	1,000
버. 법 제48조의4제5 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 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6조 제3항제12 호	300	600	1,000
서. ~ 루. (현행과 같음)				
비고: 어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커목과 퍼목은 제외하 다)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를 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6461